



국제협력센터규정

제 정 일	2015. 5. 1
개 정 일	2021. 5. 1
개정차수	3차
담당부서	국제협력센터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 국제협력센터(이하 “센터” 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역할) 센터는 외국의 대학, 기관 및 기업 등의 해외 인프라를 구축하고,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하여 본교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한다.

제 3조 (사업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해외 취업 및 해외 취업 연수 프로그램 운영 (개정 2016. 4. 1)
2. 해외 한국어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
3. 유학생 유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(신설 2015. 7. 1)
4. 글로벌 현장학습에 관한 업무 (신설 2015. 7. 1)
5. 외국 대학과의 자매결연 등 교류관련 업무 (신설 2015. 7. 1)
6. 학생 해외 자매대학 단기연수에 관한 업무 (신설 2015. 7. 1)
7. 해외 업체 및 기관과의 교류·협약에 관한 업무 (신설 2015. 7. 1)
8. 해외 귀빈 방문 및 본교 교직원의 해외 관련기관 방문 의전에 관한 업무 (신설 2015. 7. 1)

제 4조 (조직) ① 센터에 센터장, 직원, 조교를 둘 수 있다.

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.

제 5조 (운영위원회) ① 센터 운영의 주요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내로 총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국제협력센터장으로 한다. (개정 2021. 5. 1)

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단,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.

1. 센터의 주요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
2. 센터 활동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(신설 2015. 7. 1)
3.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 6조 (세칙) 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